

양돈관련 정책자금의 종류와 대출조건

1. 농업경영종합자금

※ 운전자금 단독대출 가능

가. 「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」의 개요

○농업경영체가 자체 사업 계획에 의거 필요한 자금을 연중 수시 신청하면 대출 취급사무소가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대상자를 선정하고, 시설·개보수·운전자금을 소요시기에 대출한 후 사후관리하는 제도임

다. 대출조건

○시설자금 : 3~5년거치 10년상환(인삼은 5년이내 일시상환)

○개보수자금 : 2년거치 3년상환

○운전자금 : 2년이내 일시상환

※ 철골(유리 혹은 경질) 온실 및 축산시설은 5년거치 10년상환

나. 농업경영종합자금의 특징

○대출기관 책임하에 대출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실시

○용도별로 단독 대출하거나 동시에 연계하여 대출

○지역 또는 특정분야 구분 없이 수시 대출

라. 대출대상자

○원예특작·축산분야의 재배·생산에 종사중이거나 신규로 종사하려는 농업인 농업법인

○쌀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

○원예특작·축산분야의 유통·가공·저장사업에 종사

박 병 규 과장
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

하는 자로서 정책자금 (지방 자치단체 자체사업 포함)을 지원받은 시설로 사업중인 경영체(RPC사업자는 제외)

- 경주마 사육 축산농가
-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 광농원사업자

마. 대출취급사무소

- 시군지부(156개소)
- 중앙회장이 따로 지정한 지점(7개소)
- 중앙회장이 따로 지정 한 회원조합(324개소)
- ※ 회원조합은 본소에서만 취급 가능

바. 회계자료 제출 대상자

- 법인
- 유통가공경영체
- 금융기관 총대출금이 3 억원 이상인 개인

사. 대출가부 결정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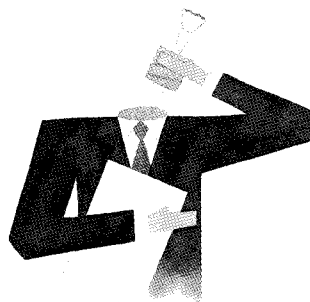
○적법성, 사업계획, 경영 평점, 사업타당성등급, 소요 자금 및 채권보전심사를 종합하여 대출가부 결정(아래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가능)

- 적법성, 사업계획, 소요자 금 및 채권보전 : 적정

- 경영평점 : 50점 이상
- 사업성 등급 : 3등급 이상

아. 시설물관련 처리사항

- 시설원예분야의 시공업 체 선정시 처리사항
- 시공업체 유자격 확인 및 입찰여부 검토, 시공계약 및 감리계약 확인, 준공 실시



○자가시공시 처리사항

- 시공규모는 제약 없음. 단, 사업자등록자 발행 영수증 없이 인건비 지급은 시설규모 60백만원 이하

○사업실적 확인에 의한 (분할)대출

- 시공·감리계약 확인 및 준공 실시
-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징구로 확인

- ※ 사업비 60백만원 초과 시설투자에 따른 자가 시공은 세금계산서가

발행되는 자재대금에 대해서만 사업비로 인정.(사업비는 부가세 포함 금액)

자. 행정기관에 의견 요청

○시설자금, 토지매입자금, 개보수자금(인·허가 등 행정 조치가 필요한 경우)에는 관 할 시·군청에 지원 적격여부 검토 의뢰

차. 시설·개보수자금대출

○선급금 지급 : 대출결정 액의 30% 이내

○대출금의 최종 20%는 준 공검사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준공검사실시 후, 기타 시설 인 경우에는 시설물 완공 후 지급

2. 축산경영자금

가.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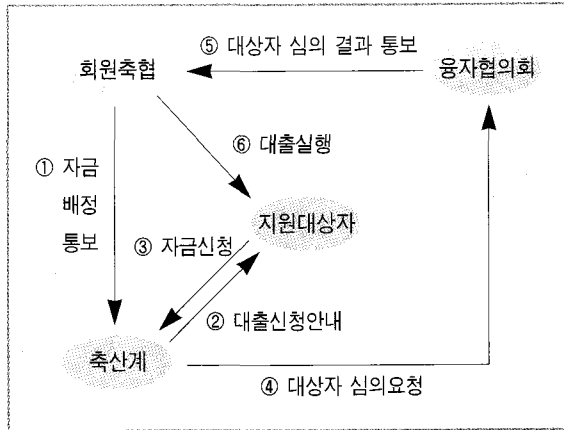
○목 적 : 축산농가에 사 료 구입비, 동물약품비 등 가 축사육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지원하여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

○지원근거 : 2001년도 농림 사업시행지침 및 축산경영자

금융계획(농림부)

○지원대상자

- 일반축산경영자금 : 부업 규모의 일반축산농가
- 전업축산경영자금 : 2001년도부터 농업경영종합자금으로 전환 지원
- 재해대책자금 :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농가 및 화재, 질병 등 사고 재해 농가



나. 대출조건

○대출금리 : 연 5.0%

○대출기간 : 1년 이내 일시 상환(1년 범위내 연장가능)

다. 지원 대상 및 지원 한도

○일반축산경영자금 : 한우 30두, 젃소 30두, 돼지 500두, 닭 1만수 미만 사육농가

- 지원한도 : 10백만원 이내

○전업축산경영자금 : 일반축산경영자금 사육규모를 초과하는 농가는 농업경영 종합자금으로 지원

라. 대출지원절차

○일반축산경영자금

○재해대책자금 : 정부의 지원계획 및 시장, 군수의 피해조사에 의함

3. 축산발전기금

가. 개요

○지원목적 :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

○지원근거

- 축산법 제 35조
- 2000.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(농림부)

○대상자 선정 : 사업주관기관(시장, 군수 등)

- 지원대상 : 축산농가, 업체, 회원축협 등

○대출금리 : 사업별로 상이(0.0%~5.5%)

○대출기간 : 사업별로 상이(1년만기~5년거치 10년상환)

나. 대출절차

① 정부 한도배정 통보에 의거 기금차입후 시, 도지역본부에 한도배정

② 시, 도지역본부에서 대출사무소별(조합) 한도배정

③ 대출신청 안내

④ 대출실행

※ 지역본부에서 대출사무소에 한도가 배정되면 사업주관기관의 용자대상금액 확정 통지에 따라 실행

- 대출사무소는 사업대상자의 주소지(또는 사업장)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중앙회 시군지부(지점) 및 지역축협, 품목조합으로 함.





축산발전기금대출 사업별 지원대상자 및 조건

사업명(용도)	사업대상자 및 대출조건
<p>축산물 종합처리장 (LPC)건설(시설자금)</p> <p>종합처리장, 공판장,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(운영자금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도축장 운영자 등이 농림사업 신청에 의거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심사를 거쳐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하는자 - 이율 : 연 3.0% - 기간 : 15년 (5년거치 10년균분상환) - 정부사업계획에 의해 정책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·운영중인 LPC -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축산물 도매시장·공판장으로서 1년이상 경영실적이 있어야 함 축산물종합처리장(LPC)경영안정자금 이율 : 연 5.0% / 1년거치 일시상환 - 축산물도매시장·공판장 출하추진자금 생산자단체 연 5.0%, 일반 연5.5% / 1년거치 일시상환
<p>브랜드육 육성 (브랜드육 가맹점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축산물(한우고기, 돼지고기)브랜드 등록이 되어 있는 브랜드 업체로서 (축산물종합처리장, 지역축협, 일반브랜드업체)냉장육 생산공장을 운영하면서 직영판매장을 설치하거나 당해 브랜드육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확보하고자 하는자(품질인증업체 우선 선정) - 직영판매장 및 가맹점에 음식점(단, 육류를 전문적으로 조리·판매하는 일반음식점)을 겸업하는 경우도 포함 - 이율 : 연 5.0% - 기간 : 8년 (3년거치 5년 균분상환)
<p>브랜드육 육성 (브랜드육 가공시설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분육공장을 경영하면서 상표법 규정에 의한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 브랜드를 등록하고 직판장 또는 가맹점 등을 통하여 브랜드육으로 판매하는 자로서 가공장시설을 새로 건설하거나, 기존시설을 보완하고자 하는 자 - 지역조합등 생산자단체,식육판매업자,일반업체 등에서 브랜드육을 생산하여 회원이나 가맹점등을 통하여 공급(판매)하고자 하는 자로서 특허청에 등록된 브랜드가 있거나, 등록을 신청한 자 - 이율 : 연 5.0% - 기간 : 15년 (5년거치 10년균분상환)
<p>축산물판매업소지원 (한우전문판매점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협중앙회, 지역조합, 한우영농조합법인, 한우사육농가(전업농가)로서 한우고기 전문판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- 기존의 식육판매업자가 한우고기 전문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 - 기타 한우고기 전문판매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 - 음식점(단, 육류를 전문적으로 조리·판매하는 일반음식점)과 겸업으로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- 이율 : 연 5.0%(생산자단체, 생산농가) 및 5.5%(일반) - 기간 : 8년 (3년거치 5년 균분상환)
<p>축산위생시설 지원 (도축장(HACCP)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축장 HACCP 적용 희망 영업자 - 이율 : 연 5.0% - 기간 : 15년 (5년거치 10년상환)

축산발전기금대출 사업별 지원대상자 및 조건

사업명(용도)	사업대상자 및 대출조건
축산물판매업소지원 (식육판매모범업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서, 법적 권장면적(8평)이상의 식육판매 점포면적을 보유자한 자 - 국내산 쇠고기, 돼지고기에 대하여 냉장육을 판매하고 있거나, 냉장육 판매시설과 기술이 있는 자로서 식육의 구분판매(부위별·등급별·쇠고기 종류별)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타 업소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 - 이율 : 연 5.0%(생산자단체, 생산농가) 및 5.5%(일반) - 기간 : 8년 (3년거치 5년 균분상환)
도축도매시설 (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도축장 영업의 3년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서 2000년말 현재 기존 도축장 영업을 하고 있는자 - 축산발전기금 용자에 결격사유나 제한을 받고 있는 도축장 영업자는 신청대상이 될 수 없음 - 인접 시·도의 기존도축장 3개소 이상을 통·폐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- 이율 : 연리 3.0% - 기간 : 15년 (5년거치 10년 균분)
오리도축가공시설 (시설자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오리의 생산, 도축·가공 및 판매에 이르는 계열화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로서 오리도축장 경영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자 - 이율 : 연리 5.0% - 기간 : 15년 (5년거치 10년 균분상환)
수매비축사업 (돼지구매비축자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이 추천하는 육가공업체 - 이율 : 연 0.0%(무이자) - 기간 : 9개월거치 일시상환 - 용도 : 비육돈(돈육) 구매·비축자금
낙농진흥회설립및 운영지원(원유 인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유일원화사업 참여 농가 및 집유조합 - 무이자, 1년거치 2년 균분상환
낙농진흥회설립및 운영지원(시설장비개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유일원화사업 참여한 낙농가 - 이율: 연3% - 기간: 3년거치 5년 균분상환
기타가축육성 (경주마육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주마(제주마 포함)를 1년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 - 영농조합법인, 농·축협, 경주마 생산자협회 - 이율 : 연리 5.0% - 기간 : 15년 (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)
사료제조시설 (배합사료제조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축협조합, 영농조합법인, 협업체, 양축농가 - 이율 : 연 5.0% - 기간 : 15년 (5년거치 10년상환)
사료제조시설 (섬유질사료제조시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축협·영농조합법인·협업체 등 생산자단체, 섬유질사료제조업체, 양축농가 - 이율 : 연 5.0% - 기간 : 15년 (5년거치 10년상환)